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나547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자 2023재나10019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나5477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7가단2028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변론 종결2021. 5. 27.

판결 선고2021. 8. 26.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7가단2028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66,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66,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아래 2항의 예비적 항소취지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청구(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331,200원 이에 대하여 2018. 9.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C는 원고로부터 절취한 핸드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일부를 D, E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D, E은 C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66,119,800원[= (85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2,360만 원 + 32,019,800원, 위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 ① 내지 ④ 금액 및 ⑤ 중 32,019,800원) + 위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3,000만 원 + E이 2013. 11. 28. 피고에게 주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2,200만 원1)]을 다시 피고에게 이체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돈이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는 수익자이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3. 11. 28.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D, E이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가 주장하는 돈 중 위 2,200만 원을 제외한 144,119,8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D의 남편이자 E의 사위, C의 매제이고, D와 E이 C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 부당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나(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피고가 C의 절취행위 또는 C, D, E의 범죄수익은닉행위가 가담하였다고 볼 경우 피고가 D,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수단이 되는 행위이거나 그 수익을 분배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지급받은 돈을 침해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 D, E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D, E으로부터 위 돈을 급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침해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수익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매제이고, D의 남편이자 E, O의 사위로서 C, D, E, O가 행한 절취 및 범죄수익은닉의 가족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피해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D, E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166,119,8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 D, E, O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1, 9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E, O가 C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들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에 당연히 가담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피고는 D, E, O와 달리 형사처벌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C, D, E, O와 공모하여 이들의 절취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정현

판사박재성

별지

1) 원고는 E이 2013. 11. 28.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주어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E이 위 일시에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없다.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3. 11. 20. 3,500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고, 피고의 여동생 J가 2013. 11. 28.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돈으로 피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J가 송금한 2,700만 원 중 2,200만 원이 E이 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